

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경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367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4.

발의자 : 이경애 의원 외 5명

1. 제정이유

-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에 대한 정의, 적용범위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시장 및 기관·단체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지원 및 대상, 방법, 지원범위, 신청절차, 봉안기간에 대해 명시(안 제5조~제9조)
-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장례업체,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고 점검·환수 할 수 있음을 명시(안 제10조~제11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 (비용추계서)

6. 입법예고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20. 4. 8 ~ 4. 13 (5일간)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 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[붙임1]

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영장례”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.
2. “연고자”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.
3. “무연고자”란 제2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공영장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 등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무연고시신 등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민간기관·비영리 단체 등(이하 “기관·단체 등”이라 한다)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노력하고, 기관·단체 등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 및 대상) ① 시장은 무연고시신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(이하 “장례비”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장례비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시신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지원대상시신 등”이라 한다)로 한다.

1. 무연고자의 경우
2.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,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신의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경우

제6조(지원방법) ① 공영장례의 지원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그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화장(火葬) 문화의 장례를 위하여 매장(埋葬)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.

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시신 등에서 제외한다. 다만,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

경우 시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범위) ① 장례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용품 및 비용과 같다.

1. 수의(壽衣), 관(棺), 유분함(遺粉函) 등 장례용품
2. 영구차량 사용료
3. 장례식장 안치료
4. 화장시설 사용료
5. 노무비
6.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

② 장례비는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하되, 법률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제8조(지원신청 및 결정)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,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자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청인 중에서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봉안기간) 지원대상시신 등의 화장 후 봉안기간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에 안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
제10조(업무대행) 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재 장례업체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 기관에 해당 장례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점검 및 환수) 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장례지원 금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
2.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
3. 해당 장례를 치르지 않은 때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이경애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9)

[별지 서식]

공영장례 지원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자				
신청인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	사망자와의 관계	
	주 소	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		장례일자	
사망자	성 명		생년월일			
	주 소					
	사망일	년 월 일	사망원인			
장례수행자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	연락처	
	장례일자			장례방법		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예금주		계좌번호	

위와 같이 「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규하

구비서류	1.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. 지원요청 내역서	수수료
		없 음

○ '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'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,
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예 아니오

○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
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.

예 아니오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〈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〉

-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 : 실명 확인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장례비 지급
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증정보, 장례차리 능력 여부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5년

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367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. 4. 24.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조문을 수정함

□ 주요골자

- 인용 조문 “제4조”를 “제5조”로 수정함 (안 제6조제3항)

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제4조” 를 “제5조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6조(지원방법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 례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시신 등에서 제외한다. 다만,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<u>제4조</u>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시 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지원방법) ① ~ 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제5조</u> -----</p> <p>-----</p>